

#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문영민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38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7월 24일

발 의 자 : 문영민, 박호근, 이명희,  
김제리, 맹진영, 박기열,  
김용석(도봉), 서윤기, 김정태,  
우창윤, 진두생, 신건택,  
김광수(도봉) 의원(13명)

## 1. 제안이유

장례문화의 실소요일수 충족과 근무사기 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 
경조사 휴가 중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휴가일수를  
확대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휴가일수를 3일에서 5일로 함  
(안 제24조제1항의 별표 3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중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휴가일수를 “3”에서 “5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3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24조제1항 관련)</b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bottom: 5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60%;">대 상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일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 략)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사망</td> <td>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3</u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이하 생략)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대 상	일수		(생 략)		사망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<u>3</u>		(이하 생략)		<p>[별표 3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24조제1항 관련)</b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bottom: 5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60%;">대 상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일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사망</td> <td>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5</u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이하 동일)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대 상	일수		(현행과 같음)		사망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<u>5</u>		(이하 동일)	
구분	대 상	일수																							
	(생 략)																								
사망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<u>3</u>																							
	(이하 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대 상	일수																							
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
사망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<u>5</u>																							
	(이하 동일)																								